

# 2020 연말정산 안내문

## 차 례

2020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교직원께서는 공제신청을 누락하거나 가산세가 추징되는 부당공제신청이 없도록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자료 입력 기간(URP) : 2021.01.15.(금) ~ 01.21.(목)
- 마감 기한 : **2021.01.21.(목) \* 우편 제출 시 도착 일자 기준**
- 서류 접수처 : 대학본부 학사민원실 106호 연말정산센터 (구. ACE사업단 행정팀)  
\* 내선 4551 ~ 4553 / FAX 053-810-4550 / 이메일 [yutax@yu.ac.kr](mailto:yutax@yu.ac.kr)
- 제출 서류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공제항목명세서(홈택스PDF), 기타 영수증 등  
\*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제출 권장 (수합 제출 / 우편 제출)  
\* 서류접수를 제외한 모든 문의사항은 내선 및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영남대학교는 2020년 소득이 있는 교직원에게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득이 신고가 누락되거나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교직원께서는 본인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추후 세액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해당기간 내 연말정산이 어려운 경우 **2021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 후 환급(또는 환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매년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기타 과다 공제(기부금, 주택대출 등)이 발견되어 추가세액 및 가산세 추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확인 및 유의사항>

- **연말정산 기간 중 개별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접수처 및 주무부서에서 대행해드릴 수 없습니다.**
-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인해 기부금명세서상의 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작성 · 제출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것.
- 일괄반영 근로소득 : 교직원 본인 또는 직계자녀에 대한 복지장학금, 장기근속 또는 퇴임매달, 건강검진비 지원금, 교직원(가족포함) 진료비감액분, 교직원 식대지원금, 직무발명보상금 등  
\* 진료비 감액분 확인 사이트 <https://yumc.ac.kr:8443/prtreq/>
- 일괄반영 세액공제 : 노동조합비 등

I. 2020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3
II. 소득·세액공제신청서 유의사항	5
III.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7
IV. 소득·세액공제 안내	8
1. 인적공제	8
2. 연금보험료 공제	9
3. 특별소득공제	9
4. 그 밖의 소득공제	10
5. 세액감면	12
6. 세액공제	12
V. 제출서류 안내	16
VI.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20
1.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쪽) 작성요령	20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3쪽) 작성요령	24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7쪽) 작성요령	30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8쪽) 작성요령	31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예시	32
6.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요령	38
7. 기부금지급명세서 작성요령	40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42
VII.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43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43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45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46

2021. 01.

## 총 무 처 장

## I. 2020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근로소득공제금액 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를 적용</li> <li>- &lt;추가&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 수준별 70% ~ 2% 공제를 적용</li> <li>- 공제한도 : 2,000만원</li> </ul> </li> </ul>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제외</li> </ul> </li> </ul>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기준 총급여액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li> </ul> </li> </ul>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li> <li>- (한도) 연간 2천만원</li> <li>- (적용기한) 2020.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li> <li>- (한도) 연간 3천만원</li> <li>- (적용기한) 2021.12.31</li> </ul> </li> </ul>																															
부양가족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제한한 경우 배우자 포함)</li> <li>- 이등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제한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포함</li> <li>-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li> </ul> </li> </ul>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 출자·투자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시기 : ① 또는 ② 중 선택</li> <li>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li> <li>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조합 출자·투자금액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시기 : ①을 원칙으로하되 투자자의 시기 변경신청을 통해 ②선택 가능</li> </ul> </li> </ul>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결제수단·대상에 따라 차등</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결제수단·결제시기에 따라 차등</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공제율</th> </tr> <tr> <th>3월</th> <th>4~7월</th> <th>그 외</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30%</td> <td rowspan="3">80%</td> <td>15%</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60%</td> <td>30%</td> </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 <td>60%</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80%</td> <td>80%</td> <td>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구분	공제율			3월	4~7월	그 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80%	4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구분	공제율																																
	3월	4~7월	그 외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8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td> <td>1억2천만원 초과</td> </tr> <tr> <td>연 300만원</td> <td>연 250만원</td> <td>연 2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2019년	2020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7천만원 이하</td> <td>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td> <td>1억2천만원 초과</td> </tr> <tr> <td>연 330만원</td> <td>연 280만원</td> <td>연 23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2019년	2020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연 330만원	연 280만원	연 230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연 300만원	연 250만원	연 200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연 330만원	연 280만원	연 230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내국인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소지자로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li> </ul> </li> </ul>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자 :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li> <li>②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급여액 1억 2천 이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50세 미만자 등 : 연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li> <li>- 만 50세 이상자*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li> <li>※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li> </ul> </li> <li>②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자 : 연 3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연 700만원)</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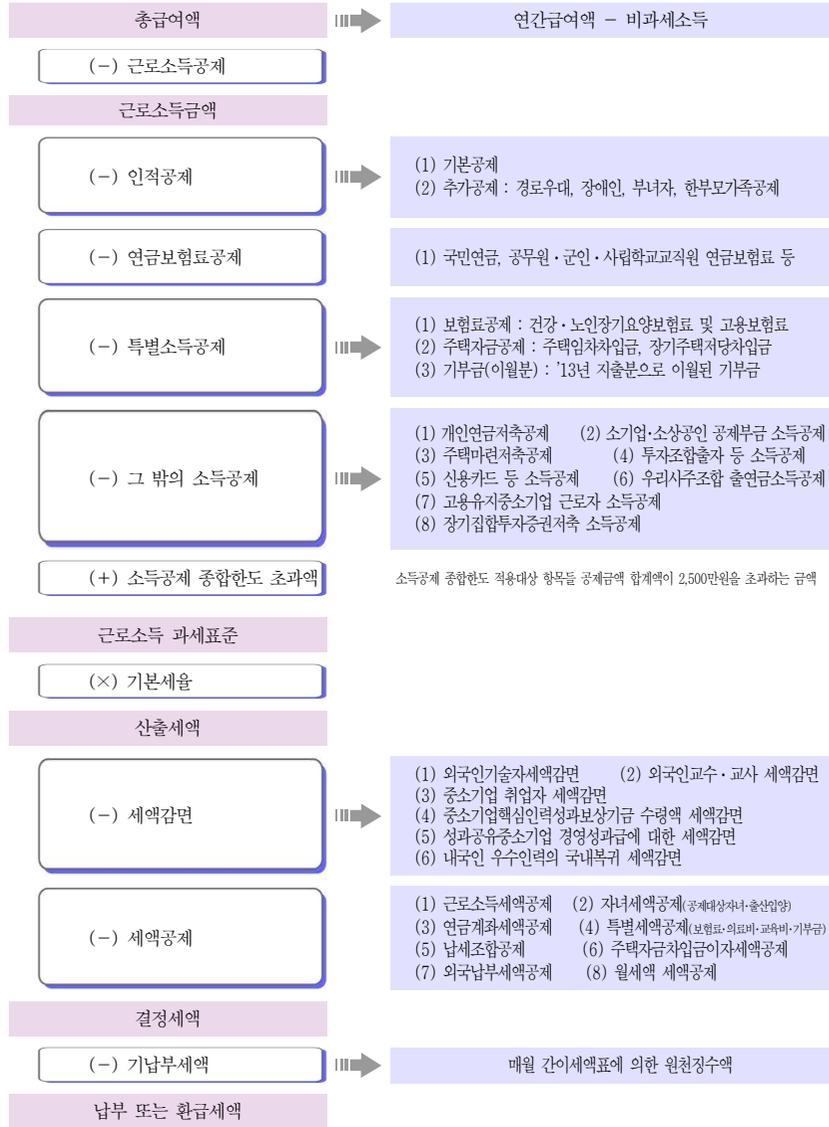
## II. 소득공제 신청시 유의사항

국세청은 매년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부당공제자로 적발되어 세무상 불이익 및 회사 이미지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를 필히 확인.</li> <li>○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간의 중복공제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li> </ul> </li> <li>○ 해외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등에 대해 인적공제 공제 신청불가</li> <li>○ 맞벌이 부부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또한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신청할 수 있음.</li> <li>-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20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li> </ul> </li> <li>○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li> <li>*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li> </ul> </li> </ul>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li> <li>-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 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li> </ul> </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li> <li>-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li> <li>-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li> <li>- 보유주택 수 관전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li> </ul> </li> <li>-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li> <li>-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li> </ul> </li> </ul>

구 분	소득공제 신청시 주요 확인사항
주택마련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li> <li>- 연 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li> </ul> </li> </ul>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li> <li>○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li> <li>○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li> </ul>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은 2000.12.31. 이전 가입분을 말함</li> </ul> </li> <li>○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불가</li> </ul>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li> <li>○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신청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신청할 수 없음</li> </ul>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본인만 가능)</li> <li>○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불가</li> <li>○ 동일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끼리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공제 받을 수 없음</li> <li>○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li> <li>○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li> </ul>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li> <li>○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li> <li>○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불가</li> <li>○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li> <li>○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지는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li> <li>**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li> <li>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li> </ul> </li> </ul>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li> <li>○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li> </ul>

### III. 연말정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흐름도



### IV. 소득·세액공제 안내

#### 1. 인적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b>1인당 150만원을 공제</b>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sup>※1</sup>	소득금액요건	
	근로자 본인	1명당 : 150만원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	-		
	기타 부양 가족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의 동거 <sup>※2</sup>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	만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시 만 20세 이하 <sup>※3</sup> )		
	위탁아동	-	-	-		
<sup>※1</sup>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sup>※2</sup> 학업·취업·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따로 사는 경우)도 동거가족으로 봄 <sup>※3</sup>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등은 위탁아동 연장가능						
♣ "나이요건" 적용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70세 이상		
2000.01.01. 이후 출생			1960.12.31. 이전 출생	1950.12.31. 이전 출생		
●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추가공제를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자공제	1명당 100만원	만 70세(1950.12.31 이전 출생) 이상				
장애인공제	1명당 200만원	장애인(발달장애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sup>※1</sup> 포함),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sup>※2</sup>				
부녀자공제 <sup>※3</sup>	연 50만원	총급여액이 41,470,588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 배우자(소득 유·무 불문)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공제 <sup>※3</sup>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sup>※1</sup>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장애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장애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제21조①). <sup>※2</sup> 암, 중풍, 백혈병, 치매 등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sup>※3</sup>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 2. 연금보험료 공제

-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음. 다만, 별도로 납입한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할 것.
-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중(전)근무지의 연금보험료”란에 기재할 것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sup>주1</sup>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전액	
	<sup>주1</sup> 2020.01.01 ~ 12.31일까지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 3. 특별소득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 입사자의 경우 전(前)회사에서 납부한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중(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할 것.</li> </ul>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건강·노인장기·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 근무기간 중에 별도로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것.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sup>주1</sup>)인 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공제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전세보증금 등)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li> </ul>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
	공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sup>주2</sup></li> <li>•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li> <li>•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sup>주2</sup></li> <li>• 기획재정부령 이자율(1.8%)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li> </ul>
	공제금액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sup>주1</sup>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보증금 등을 차입한 경우를 말함. <sup>주2</sup>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14.02.21 이후분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 전세계약 연장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li> <li>•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 이사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인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li> </ul>				
	구분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14년~‘18년 차입한 차입금	‘19년 이후 차입금	
	공제요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li> <li>•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li> <li>•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이하 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li> <li>•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li> <li>•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li> <li>•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li> <li>•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일 것</li> </ul>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03.12.31 이전 차입금 및 ‘15.02.01 이후 차입금(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li> <li>• 소유권(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li> <li>•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로 일 것.</li> </ul>		
	○ 공제한도				
	구 분		상환기간 또는 상환유형	공제한도	
	20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1,500만원 연 500만원	
	‘12.01.01~‘14.12.31 차입금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 3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타 대출	연 1,500만원 연 500만원	
2011.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	10년 이상 15년 미만(‘03.12.31이전 차입금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 600만원		
		15년 이상 30년 미만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		
○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 주택입주권)로서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 4.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기재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개인연금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li> </ul>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공제한도 : 200만원~500만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li> <li>* 2016.01.01. 이후 가입자 중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때에만 공제가능.</li> <li>** 2019.01.01. 이후 가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하여 공제금액 계산함.</li> <li>--&gt; 공제한도내 납입금액 × (1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주택마련 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명으로 가입한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li> </ul>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납입한도	공제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부주택 세대<sup>주1</sup>의 세대주</li> </ul>	연 240만원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sup>주1</sup> '09.12.31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아래의 공제율(10% ~ 100%)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li> </ul>			
	대 상		공제율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 · 사모펀드(PEF)</li> </ul>		10%	종합소득금 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조합 · 벤처 기업 등</li> </ul>	'18년 이후 투자분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나이 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b>형제자매 등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b>)</li> <li>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신장·대중교통사용분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li> </ul>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결재수단 구분	1월~2월	3월	4월~7월
	신용카드	15%	30%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30%	60%	30%
	전통신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40%	80%	4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in(330만원, 총급여액의 20%)	280만원	230만원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신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b>벤처기업 1500만원</b>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연 1,000만원 한도)</li> <li>-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li> </ul>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li> </ul>			
	공제요건	공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li> </ul>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 5. 세액감면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18.12.31. 이전 근무자는 2년간 적용)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 적용.</li> <li>* 20.01.01 이후 최초로 근무하는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li> </ul>		
	구 분	청년	청년 이외의 자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감면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4세 이하 청년<sup>주1</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60세 이상 자</li> <li>장애인<sup>주2</sup></li> <li>경력단절 여성('17.01.01 이후 재취업부터)</li> </ul>
	감면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 세액감면(150만원 한도)*</li> <li>* 14.01.01~15.12.31 취업자는 50% 감면.</li> </ul>
	감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li> </ul>	
	<sup>주1</sup>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제결일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연령으로 나이계산. <sup>주2</sup>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포함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원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조약의 교직원 면제조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초청되어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세액의 100% 면세.</li> </ul>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수령 에대한소득세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 공제)에 2021년 12월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소득세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li> </ul>		
성과공유중소기업 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li> </ul>		
내국인우수인력의 국내복귀 세액감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학위 취득한 경우로서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 감면.</li> </ul>		

## 6. 세액공제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li> </ul>		
	구 분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1명당 15만원</li> <li>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li> </ul>	
	출산·입양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입양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7세 이상 자녀는 2013.12.31.이전 출생자임.</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액 공 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에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공제대상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td> <td>만 50세 미만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만 50세 이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td> </tr> <tr> <td>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9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td> </tr> <tr> <td colspan="2">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만 50세 미만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만 5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9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구 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자	만 50세 미만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만 5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4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9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6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금액 = Min (① + ②, 연 700만원)</li> <li>① 연금저축 납입액과 연 300만원 중 작은 금액.</li> <li>②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자"의 공제한도를 적용함.</li> </ul>																
세 별 액 세	보 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요건</th> <th>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보장성보험료<sup>주1</sup></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td> </tr> <tr> <td>장애인전용보험료<sup>주2</sup></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         </td> </tr> </tbody> </table>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sup>주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험료 <sup>주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보장성보험료 <sup>주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2%													
장애인전용보험료 <sup>주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li> </ul>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의 15%															
<sup>주1</sup>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보험(종신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sup>주2</sup>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세 액 공 제	의 료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지출한 다음의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자</th> <th>공제대상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sup>주3</sup></th> <th>공제한도</th> <th>세액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난임시술비</td> <td row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li> <li>●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td> <td rowspan="2">한도없음</td> <td rowspan="2">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난임시술비 20%)</td> </tr> <tr> <td>②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sup>주1</sup>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sup>주2</sup></td> </tr> <tr> <td>③ 그 밖의 부양가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td> <td>연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sup>주3</sup>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li> <li>●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난임시술비 20%)	②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 <sup>주1</sup>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sup>주2</sup>	③ 그 밖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연 700만원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 <sup>주3</sup>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① 난임시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li> <li>●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li> <li>●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li> <li>●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li> <li>●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li> <li>● 난임시술비</li>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한도없음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난임시술비 20%)											
②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 <sup>주1</sup>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sup>주2</sup>																
③ 그 밖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li> </ul>	연 7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등) 구입비는 제외</li> </ul>																
<sup>주1</sup> 만 65세 이상자는 1955.12.31.이전 출생자를 말함. <sup>주2</sup>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재등록된자를 말함. <sup>주3</sup>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및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비지출액 중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li> <li>- 의료비 공제금액 = ① + ② + Min( ③ - 실손의료보험금 - 총급여액×3%), 연 700만원)</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세 별 액 세	공 액 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li> </ul>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도서구입비 포함)</li> <li>●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li> <li>● 초·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li> <li>● 초·중·고생 체험학습비(1명당 30만원 한도)</li> <li>● 원격대학·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및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li> <li>● 우리나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해당하는 해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sup>주1</sup></li> <li>● 다음의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비</li> <li>-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sup>주3</sup></li> </ul> </li> </ul>	1명당 3백만원 1명당 9백만원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일 반 교육비 근로자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li> </ul>	전액공제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 <sup>주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지출한 교육비</li> </ul>	전액공제									
<sup>주1</sup> 연말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유학 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국외교육비 공제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고등학생 이상인 경우</td> <td>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td> </tr> <tr> <td>중학생 이하인 경우</td> <td>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중학생 이하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구분	국외교육비 공제 여부										
고등학생 이상인 경우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중학생 이하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교육비 공제가능.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sup>주2</sup>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장애인재활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sup>주3</sup> 근로자 본인이 대학교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취업이후 동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제신청할 것.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육비 신청시기 및 공제신청 가능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td> </tr> <tr> <td>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교육비 신청시기 및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구분	교육비 신청시기 및 공제신청 가능 여부										
2016.12.31. 이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 공제신청 불가</li> <li>● 근로자 본인이 재학 중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공제신청 가능</li> </ul>										
2017.01.01. 이후 학자금 대출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이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임(재학 중에 동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교육비 신청 불가).</li> </ul>										

항 목		항목별 공제요건 요약설명				
특 별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li> </ul> </li> </ul>				
		구분	기부 코드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세 액 공 제	기부금	① 정치자금기부금	20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내 기부금× 15%(25%,30%) <sup>주1</sup>	
		② 법정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①)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 정 기부금	종교단체외	40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교단체	41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종교단체기부금의 공제금액은 소득금액의 10% 를 초과할 수 없음.
<sup>주1</sup>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25%. ▶ 법정·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단, '16년~'18년 이월기부금은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4년~'15년 이월기부금은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적용)						
액 공 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1995.11.1~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산출세액의 5% 공제				
세 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해외 과전 등으로 과전국가에 납부한 세액(외국납부세액) <sup>주1</sup> 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sup>주1</sup>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의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sup>주2</sup> * 국외근로 제공대가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sup>주2</sup>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면제 또는 세액면제·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하므로 아래와 같이 한도액을 계산함.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금액} - (\text{세액면제} \cdot \text{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div \text{감면비율})}{\text{근로소득금액}}$				
	월세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중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li> </ul>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자일 것</li> <li>●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li> </ul>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0%(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12%			

## V. 제출서류 안내

항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근로자 본인	이종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지(변동)신고서</li> <li>●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 기부금명세서</li> </ul>	종된 근무지 회사		
	채취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li> <li>●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li> <li>● 기부금명세서</li> </ul>	전 직장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사실증명</li> </ul>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인적공제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li> <li>● 가족관계증명원 :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li> </ul>	정부24 (www.gov.kr)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li> <li>● 본래의 주소지 및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li> <li>● 일시퇴거 사유별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li> </ul>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기관	
	입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증명서, 입양관계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li> </ul>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입양기관		
	기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증명서</li> </ul>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보호확인서</li> </ul>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li> </ul>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증명서</li> </ul>	국가보훈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li> </ul>	해당 의료기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주택 차입금 공제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개인간 (거주자간)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본인이 직접 작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연장(갱신) 또는 이사의 경우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상환증명서류	근로자 본인	
		• 연장(갱신) 또는 이사 전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본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구청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		해당 금융기관		
- 분양권계약서 사본(분양권에 한함)		본인보관 또는 분양회사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소기업중소기업 공제부금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	
투자조합출자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벤처기업 투자 등은 중소기업청)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금융기관	○	
	• 현금영수증 연간사용금액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해당 금융기관	
	장애인전용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필수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병원·약국 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해당 의료기관	○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해당 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될 것)	의료기기 판매점	
		• 의사 등 처방전	해당 의료기관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안경점	△ (의무제출 아님)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판매자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영수증	해당 의료기관	
산후조리원비	•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	
국내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 교육비납입증명서(어린이집·유치원)	해당 교육기관	○
		• 교육비납입영수증(학원)	해당 학원	
		•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해당 교육기관	○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해당 판매점	△
		• 방과후학교 수업용도서구입증명서 (학교외 구입분)	해당 교육기관	
		• 학자금대출상환 교육비납입영수증	한국장학재단 등	○
장애인재활 특수교육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특수교육기관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입증 서류			
국외교육비	• 교육비납입영수증	해당 교육기관		
	• 유학중인 자녀가 유치원·초·중·고학 생인 경우(국내근무자에 한함)			
	- 국외유학인정서	국제교육원 등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 실증명서	재외공관		

항 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	
기부금공제	필수서류	● 기부금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정치자금	● 정치자금·후원금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 기부금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
		●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 설립허가증		
이외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해당 기부단체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외국납부세액의 증명서류	해당 외국국가에서 발행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본인이 직접작성		
	● 미분양주택확인서	시·군·구 또는 분양회사		
	● 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 매매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www.gov.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자 본인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자료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VI.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 1. 소득공제신고서(1쪽) 작성요령

#### (1) 기초정보 작성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명을 기재

나. 소득자의 세대주 여부, 국적,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기재

① 국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소득자의 국적을 기재(외국인인 경우만 기재, 내국인은 공란)**

② 세대주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체크

-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구분할 것.**

- 세대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③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적공제 항목(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란에 체크

다. 분납신청 여·부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3개월간 분납할 것인지의 여부를 "[ ]신청, [ ]미신청"란에 체크.

(2)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인적공제 대상여부 및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기재.

I.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 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자녀 : 명)					국세청 계										
0	(근로자 본인)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가. 인적공제항목 작성요령

① 관계코드 및 성명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50 ③ 가)	2
배우자 (소법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50 ③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50 ③ 나)	5*
형제자매 (소법 \$50 ③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50 ③ 라)	7	위탁아동 (소법 \$50 ③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와 (외)손자·녀는 관계코드 "5"로 기재

**【기재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비(나이제한 없음), 의료비(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나이제한 없음), 기부금(나이제한 없음)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② 내·외국인 : 내국인 "1", 외국인 "9" 로 기재

③ 자녀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수를 기재

④ 인적공제항목 : 아래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란에 "○" 표시

①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기본공제란에 "○" 표시  
 ㉠ 부녀자공제 : 근로자본인이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미혼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 표시. 단,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못함(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만 "○" 표시)

㉢ 경로우대 : 근로자본인 또는 기본공제자 중 1950.12.31 이전 출생자(만70세 이상)가 있는 경우 "○" 표시

㉣ 장애인 : 근로자본인 또는 기본공제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란에 아래의 해당코드를 기재.

구 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①에 따른 발달장애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 출산·입양 : 당해연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표시

㉦ 자녀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대해 "○" 표시.

나.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작성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자료의 금액은 「국세청」란, 이외의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의 금액은 「기타」란에 기재.

I.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0	김은철					국세청											
1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 ① 보장성 보험료 :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출한 금액을 전액 기재.
- ② 의료비 :
  - ㉠ 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환자명 기준으로 기재.
  - ㉡ 실손의료보험금 :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수익자 기준으로 기재할 것.
- ③ 교육비 :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에 지출한 교육비(수업료, 교복구입비 등)를 학생기준으로 기재
- 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 것.**

사용시기별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함), 전통신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3월 사용분, 4월~7월 사용분의 합계액, 그 외(1월,2월 및 8월~12월사용분 합계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전통신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신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함)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따라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액은 해당 결재수단인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기재.

- ⑤ 기부금 : 근로자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명의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기부자 기준으로 기재.

##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2,3쪽) 작성요령

소득·세액공제신고서 2쪽, 3쪽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연금보험료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월)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월)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 ① 회사 급여지급시 원천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외의 공적연금보험료(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회사에서 반영할 것임.
- ②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입사자는 종전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종(전)근무지”란에 기재

### (2) 보험료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I. 특별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월)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월)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 ① 회사 급여지급시 원천공제된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회사에서 반영할 것임.
- ②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신규입사자는 종전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종(전)근무지”란에 기재

### (3) 주택자금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I. 특별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금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① 주택임차차입금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대출기관 차입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기재
  - 거주자 차입 : 대부분을 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기재(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에 한함)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을 차입시기에 따라 상환기간·상환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구 분	2013.12.31. 이전 차입금	'14년~'18년 차입금	2019.01.01. 이후 차입금
주택취득 전	• 무주택 세대일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일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일 것
주택취득 시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진흥면적 85㎡, 읍·면지역은 100㎡)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sup>1</sup> •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분으로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 것 •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근로자본인일 것.	• 주택(주택규모 제한 없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sup>1</sup> •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분으로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 것 <sup>2</sup> •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근로자본인일 것.	• 주택(주택규모 제한 없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것. <sup>1</sup> •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분으로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일 것 <sup>2</sup> • 주택소유자와 차입금 채무자가 근로자본인일 것.
주택취득 이후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 것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기준시가 조회확인 가능
2. 2015.01.01. 이후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고령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자상환분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이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음.

(4)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 이전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당해연도 납입액을 기재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의 40%와 72만원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을 기재. 단, 2016.01.01.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한하여 공제금액 기재.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그밖의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을 기재.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할 필요 없음.**

구 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① 청약저축 :

- '09.12.31 이전 가입분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1채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10.01.01 이후 가입분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7) 투자조합출자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출자·투자한 연도별로 조합 등과 벤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2018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20년 이후 출자·투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신고서 1쪽의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란에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을 아래의 ①~⑦ 해당란에 구분하여 기재.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9)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기재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1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장기주택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기재.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V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11)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연금저축(2001.1.1 이후 가입분)에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입한 금액을 기재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12) 보험료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 ① 일반보장성보험료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일반보장성보험의 납입금액 기재
- ② 장애인보장성보험료 : 기본공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기재.

(13)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신고서 1쪽의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의료비 기재내역을 본인·65세 이상자(1955.12.31. 이전출생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으로 구분하여 작성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15)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공제신고서 1쪽의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교육비 기재내역을 근로소득자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작성. 단,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재.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 명 )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 명 )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16)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신고서 1쪽의 「각종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기부금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기부금 유형별로 작성. 단, 정치자금기부금 중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인 최초 10만원은 「10만원 이하」란에 기재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15% 또는 25% 또는 30%		
		우리아우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17)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 ①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과 납부일 등을 기재  
 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 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재

(18)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재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	-----	------------	--

3. 소득·세액공제신고서 (7쪽) 작성요령

당해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청약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해 해당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미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미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 연도	투자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소득·세액공제신고서 (8쪽) 작성요령

당해연도에 지출한 월세액 또는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임·직원은 아래의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작성하여야 함.

[ ] 월세액 ·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전화번호 : )
	⑥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2. 월세액 소득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⑬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⑭ 연간 월세액(원)	⑮ 세액공제금액 (원)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⑯ 대주(貸主)	⑰ 주민등록번호	⑱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⑲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금액			
				㉑계	㉒원금	㉓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㉚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㉛ 전세보증금 (원)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5.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예시

(1) 가족현황

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고사항
본인	김갑수	770430 - 1245819	• 세대주, 만 43세
처	문소리	810128 - 2435781	• 근로소득자 (총급여 3,500만원), 만 39세
자녀	김현중	051023 - 3248519	• 아들, 중학생(만 15세)
자녀	김현희	141111 - 4287619	• 딸, 유치원생(만 6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동거가족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고사항
아버지	김홍철	450728 - 1253219	• 장애인, 경로우대자, 시골에 거주(별도세대임)

(2) 소득공제 항목 지출내역

① 보험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종류	상호	계약자	피보험자	납입금액
보장성보험	K생명보험	김갑수	김갑수	780,000
보장성보험	K생명보험	김갑수	문소리	350,000*
보장성보험	G생명보험	김갑수	김현중	150,000
보장성보험	G생명보험	김갑수	김현희	150,000

\* 배우자 문소리는 소득금액 100만원초과로 근로자 본인 김갑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공제불가

② 의료비

자료구분	환자명	납입금액	비 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김갑수	1,100,000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500,000원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김홍철	2,540,000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문소리	850,000*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김현중	690,000	
안경점 발행 간이영수증	김현중	450,000	• 밝은 안경점(사업자등록번호 123-56-12345)

\*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문소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③ 교육비 지출내역

자료구분	학교명	학생명	납입금액	비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이상 중학교	김현중	1,850,000	
교육비납입증명서	스마트교복점	김현중	400,000	• 스마트교복점 발행 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영재 학원	김현희	2,400,000	• 영재학원 발행 영수증

④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자료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김갑수	3월	900,000	0	0	0	800,000	0	0	50,000	50,000	0	30,000	0
	4-7월	4,000,000	500,000	0	0	5,000,000	0	0	100,000	150,000	0	20,000	0
	그 외	10,000,000	2,500,000	0	100,000	6,000,000	0	0	50,000	100,000	0	100,000	0
김홍철	3월	200,000	0	0	0	0	0	0	0	0	0	0	0
	4-7월	2,800,000	0	0	0	500,000	0	0	0	0	0	0	0
	그 외	3,000,000	0	0	0	1,000,000	0	0	0	0	0	0	0

⑤ 기부금

자료구분	기부유형	기부단체	기부자	기부금액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정치자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갑수	250,000
종교단체 발행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	성신교회	김갑수	3,500,000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법정	대한적십자사	김현중	100,000

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일	상환기간	소득공제대상금액 (연간 이자상환액)
BC은행	거치식 분할상환	2010-02-24	2010-12-24 ~ 2030-12-24	6,944,016

\*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임(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기준시가 조회확인 가능)

⑦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종류	상호	통장/증권번호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L손해보험	20001033315	1,800,000
연금저축	BC은행	200408881315	3,000,000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김갑수	주민등록번호	770430 - 1245819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세대주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주 [ ]세대원	국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2020.01.01. ~ 2020.12.31	결연기간	~
거주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 코드	성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교육비				
		기본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학	자녀		보험료			의료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4	1	1	1	국세청계 기타 계	1,080,000			2,640,000		2,540,000	500,000	1,850,000	2,800,000
0	김갑수					국세청계 기타	780,000			1,100,000			500,000		
1	(근로자 본인)														
3	문소리					국세청계 기타				850,000					
1	810128-2435781					기타									
4	김현중					국세청계 기타	150,000			690,000				1,850,000	
1	051023-3248519					기타				450,000				400,000	
4	김현희					국세청계 기타	150,000								
1	141111-4287619					기타								2,400,000	
1	김홍철					국세청계 기타							2,540,000		
1	450728-1253219					기타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	3월	1,100,000	800,000	50,000	50,000		30,000
	4-7월	6,800,000	5,500,000	150,000	100,000	500,000	20,000
	그 외	13,000,000	6,000,000	100,000	150,000	3,500,000	100,000
김갑수	3월	900,000	800,000	50,000	50,000		30,000
	4-7월	4,000,000	5,000,000	150,000	100,000	500,000	20,000
	그 외	10,000,000	6,000,000	100,000	150,000	2,500,000	100,000
김홍철	3월	200,000					
	4-7월	2,800,000	500,000				
	그 외	3,000,000				1,000,000	









## VII.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양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되, 단, 비회원인 경우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로그인 → 홈택스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또는 인쇄

아래의 각각의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지출(사용)금액이 조회하여, 「한번에 내려받기」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신규입사자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2020년도 중 입사한 입직원의 경우 아래 테두리박스와 같이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월의 체크표시를 해제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월의 체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소득·세액공제항목의 지출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 재취업한 중도입사자는 전직장의 근무개월수를 포함하여 체크할 것.

<예시 : 2020년 7월 1일에 신규입사한 경우(전직장 근무경험 없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연도: 2019년   전체월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번에 내리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적불카드 등 (Debit Card)
2,182,260	2,575,800	4,568,900	733,010	0	8,239,909	4,769,355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1,419,495	0	0	0	0	0	360,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간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기본내역 (본인공제항목)			주택마련저축 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급기관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저축구분   <input type="checkbox"/> 가입일자   <input type="checkbox"/> 납입금액 계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선택: 0 건			선택할게 0 원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여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현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의 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됩니다.

## 3.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증 신청"을 이용하면 되며,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 없거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방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기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첨부서류] 본인인증: 신분증, 대리인인증: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장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 (1) 본인인증 신청방법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이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부양가족 명의의 본인인증수단(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방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① 접속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본인인증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절차 안내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0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0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05 회사계출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1월 1일~7일 08: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11월 중 08:00~24:00
자료제공동의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핀 필요)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 팩스신청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팩스 전송)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자료제공동의 신청 동의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핀 필요)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 (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 팩스신청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팩스 전송)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② 신청방법 :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 입력후 사용자 인증(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을 함.

(2) 미성년자인 자녀(만 19세 미만) 신청방법

만 19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아래와 같이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 신청」을 클릭하여 아래의 화면을 통해 자료동의신청을 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자료조회자(근로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모두가 신청가능하며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시 서명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접속방법 :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온라인 신청

② 신청방법 :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 입력후 사용자 인증(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을 함.

「온라인 신청」을 클릭한 후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 파일찾기(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첨부) → 첨부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시 (근로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PDF 또는 이미지파일(JPEG 등)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